



KIOI 소식지

February. 2022 Vol. 110



CONTENTS

NEWS

- HS2022 개정 및 RCEP 운영지침 관련 안내
- 한-중 FTA 증명서 변경사항 및 RCEP 발표자료 공유

FTA-PASS STUDY

- (유통업체) FTA-PASS로 상품정보 등록하기

FAQ

- 존재하지 않는 물품번호 오류 해결 방법

교육 · 자격

- FTA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

KIOI 소식지
February, 2022
Vol. 110

HS2022 개정 및 RCEP 운영지침 관련 안내

1. HS2022 개정 안내

2022년 제7차 WCO HS협약 개정으로 HS 상당수 개편

이번 개정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소자 · 디스플레이 모듈 · LED 모듈 · 친환경 차량, 新기술 물품인 3D 프린터 · 드론 · 전자담배 등 다수 포함

HS 6단위 연계표 관세청 FTA포털 게시(HS2022-HS2017)

⚠ 수출입신고는 HS2022 6단위 기준, 원산지증명서 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은 협정별 HS 기준으로 품목번호 기재

▶ HS 6단위 소호회신 제도(FTA 활용지원)

신청대상	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수출물품의 신속한 FTA 활용목적
신청방법	인터넷 : UNI-PASS→전자신고→신고서작성→품목분류(원칙)→사전심사→신청사유란 체크(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) 우 편 : 관세평가분류원에 우편·택배 발송
효과	10단위(HSK) 대비 신속한 회신 가능(법정회신기간 : 15일)

[관세청 공지사항\(781번\) 바로가기](#)

2. RCEP 운영지침 공지

[회원국]

한국, 아세안 10개국*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

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[발 효]

'22.2.1. 오전 0시 발효

*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미얀마 등 4개국 미발효
→ 미발효 국가의 협정 발효일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 예정

▶ RCEP 발효에 따른 FTA 환경 변화

구분	RCEP 발효 前	RCEP 발효 後
원산지기준	동일 물품 → 협정별 상이	체약국간 단일기준
협정세율	국가별 단일한 협정세율 적용 - 베트남, 싱가포르, 등 일부 국가 제외	1국 多협정 세율체계 확대 - 유리한 협정 선택 활용
증명방식	협정별 단일한 증명방식 - 中, 아세안 수출시 기관발급만 가능	선택적 활용 가능 - 기관발급 또는 자율증명(인증수출자 限)

※ 자세한 RCEP 운영지침은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관세청 공지사항\(785번\) 바로가기](#)

KIOI 소식지
February, 2022
Vol. 110

한-중 FTA 증명서 변경사항 및 RCEP 발표자료 공유

HS2022 개정에 따른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통보에 따른 FTA-PASS 활용법

- ① 원산지판정 : 기준년도 HS2012 기준으로 판정
- HS코드 메뉴에 기준년도 HS2012 등록
- ② 한-중 FTA C/O 신청 : 기준년도 HS2022 세번 입력
- FTA증명서(기관) 메뉴에 기준년도 HS2022 등록

※ 입력항목이 많은 관계로 [임시저장] 기능을 수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원산지 제출번호 6V82621000015U

신청개요 공통사항 **물품내역** 첨부파일

■ 총합계 정보 (※ 수지정보는 자동으로 계산처리)

중수량 10 EA

중중량 1 KG

중FOB미화금액 10 USD

■ 수출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(※ 선택 시 하단 물품정보에 세부내역 표시 / 신청내역 저장 시 소명서 자동생성 / 관별 규격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작성)

※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작성 시 수출물품 연번은 최대 2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[관별 규격 일련](#)

선택	No	수출신고번호/관번호/규격일련번호	제품번호	HS부호	품명,물품상세(영문)
☒	1	21115554445 / 001 / 01	SP-087-10	852580	CCTV Camera 1 Channel (1 Channel)

■ 물품정보 ※ 증명서 출력물에 표기되는 영역으로 엔터키를 클릭하시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. (수량/중량 등의 단위는 자동완성을 지원합니다.)

제품번호 (50) SP-087-10

852580 HS2012

HS코드 (10) / (HS기준년도)

HS2022 기준 세번 입력

RCEP 100%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발표자료 공유

관세청은 “RCEP 100%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”를 2022.1.19. 개최하였습니다.

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게시하오니 수출입기업, 관세사,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있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자료 1 RCEP 이해와 활용 [바로가기](#)

자료 2 RCEP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절차 [바로가기](#)

자료 3 RCEP 수출활용 비즈니스 모델 [바로가기](#)

자료 4 RCEP 가이드라인
(RCEP Implementing Guidelines) [바로가기](#)

자료 5 설명회 유튜브 동영상 [바로가기](#)

KIOI 소식지
February, 2022
Vol. 110

(유통업체) FTA-PASS로 상품정보 등록하기

유통기업

유통기업은 자사에서 제조 또는 가공작업 없이 구매한 물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
따라서 유통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빙서류(ex. 원산지확인서)가 제일 중요합니다.



구매



제조(자재명세서)

판매



Step 1. 기준정보 등록

- 거래처
- 물품정보
 - 상품여부(Y) ☆
- HS코드



Step 2. 거래정보 등록

- 구매단가
- 근거서류 ☆
- 판매단가



Step 3. 원산지판정 수행

- 일괄판정
- 판정이력



Step 4. 원산지증빙서류 발급

- | 국내 유통 서류 | 해외 유통 서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• 원산지확인서 | • FTA증명서(기관) |
| • 국내제조확인서 | • FTA증명서(자율) |

※ 원산지판정 시 세번과 원산지결정기준은 근거서류에 등록한 자료대로 판정·출력됩니다.

※ 인도 FTA에 필요한 Form I 서류의 경우 유통업체*는 Form I 을 FTA-PASS에서 자동생성 할 수 없습니다.

* Form I 에 필요한 원재료 정보가 FTA-PASS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
- 추후 FTA-PASS에서 Form I 서류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이는 FTA-PASS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• FTA-PASS란?

중견·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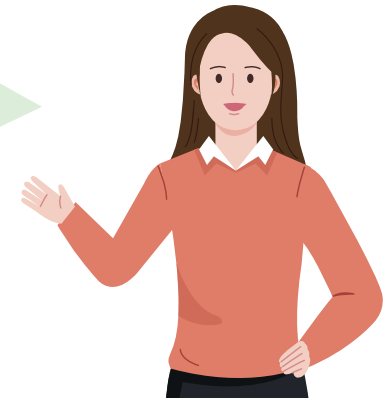
KIOI 소식지
February, 2022
Vol. 110

존재하지 않는 물품번호 오류 해결 방법

[물품정보] 메뉴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번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

Case 1 [물품정보] 메뉴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!

Case 2 물품번호에 오타자 또는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!



Case 1

[물품정보] 메뉴에서 '존재하지 않는 물품번호' 오류가 발생한 물품정보 신규등록

- ① [기준정보 > 물품정보] 메뉴 이동
- ② 누락된 물품정보 등록



- ③ 오류가 발생한 메뉴로 이동하여 다시 등록

Case 2

원재료 물품번호 비교

- ① [기준정보 > 물품정보] 메뉴 이동
- ② 등록한 물품번호(RAW_PIPE_1) 확인

[물품번호] 메뉴	[구매단가] 메뉴
 물품번호 : RAW_PIPE_1	 물품번호 : RAW_PIPE_1
* FTA-PASS는 물품번호 등록 시 한 글자라도 다르면(공백 포함) 상이한 물품번호로 인식합니다	

- ③ 올바른 물품번호로 수정 등록 - 물품번호가 사용되는 메뉴

기준정보

- 물품정보 ★
- 자재명세서
- HS코드
- 생산공정
- 거래처 물품정보

거래정보

- 구매단가
- 근거서류
- 판매단가

KIOI 소식지
February, 2022
Vol. 110

지금은 FTA 시대~! FTA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.

FTA·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

• FTA 활용 직수출 기업

-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기업
-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(예정) 기업
- 체결상대국의 FTA 원산지검증 대응 필요기업

• FTA 활용산업 內 제조기업(간접수출)

- 국내 고객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기업
-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(예정) 기업
- 국내 고객사로부터 원산지관리 평가를 받는 기업

FTA·원산지 관리 전문인력의 종류

• 원산지관리사(Certified Origin Specialist)

- 국가공인 민간자격
-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
- 3년 주기 유효기간 갱신(보수교육 이수)을 통해 전문성 유지

• 원산지실무사(Certified Origin Manager)

- 등록 민간자격
- FTA·원산지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준전문가
-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능력 보유

자격증별 FTA 업무범위

